

제 호	
건설기계 사용·운행중지명령서	
건설기계등록번호	
명령사유	
사용·운행중지기간	정기검사·수시검사·정비 명령을 받고 검사에서 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
<p>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·운행 중지를 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·도지사 직인</p>	
주 : 이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,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건설기계를 사용·운행할 수 없습니다.	